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 84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
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6041호, 2018.12.24.) 사항에 맞추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도시공
원 내 구민 이용 제한, 난개발 노출 등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
면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
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안 부칙 제1조)

2019.12.31.로 만료되는 감면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2.12.31.까지로 3년 연장.

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연장 (안 제2조)

- 2018.12.31.로 만료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연장
-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개정으로 감면 적용시한이 2018.12.31.에서 2020.12.31.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 감면 적용시한도 연장.
-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함 (안 부칙 제3조)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9조의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으로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을 공원으로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 02-3396-5105, FAX : 02-3396-8695, E-mail : kiti7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 ----- -----.</p>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지방세법 ·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p> <p>1. 2016년 12월31일까지 : 100분의 75</p> <p>2.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 100분의 50.</p> <p><신 설></p>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9조의2(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p>

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
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
정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
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
분의50을 경감한다.